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88

발의연월일: 2025. 4. 4.

발 의 자:유용원·이헌승·조승환

김소희 • 안철수 • 주진우

김미애 · 임종득 · 백종헌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 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 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 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 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업체등에 대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 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2조(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 제12조(금융지원) 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 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 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 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 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 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필 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 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에 대한 민

 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